

교육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20년~, 상대→절대평가)을 반영하여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원 폐원 시 기록물 관리 규정 신설 및 평가대상·주기 조정(제3조 제6항 신설, 제3조의2제1항 개정)

연수원 폐지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취소 명령을 받을 경우, 모든 연수 기록, 성적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 주기(2년→3년)를 조정함

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4조제4항 개정)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20.4.)에 따라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기간을 설정함

다. 원격교육연수 심사 예외 기관 추가(제7조제3항 개정)

영 제2조제8항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도 원격교육연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라. 연수원 운영정지 및 설치인가 취소 세부기준 명시(제3조의3 및 별표 1 개정)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리 기간 기준을 신설함

마.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이수증 신설(서식2 신설)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기관이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경우, 지정 인가 번호를 기재하도록 이수증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를 받는 자는 설치인가 이후부터 취소 전까지 운영한 모든 연수의 이수 기록, 성적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영 제2조의2제1항”을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원에 대하여 영 제2조의2제1항”으로,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을 “운영”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을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를 “시정명령, 제4항에 운영정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를 “반영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제3조의3 관련)”을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세부기준 (제3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3 제5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한다.

가. 시정명령의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 내지 3호의 경우: 2개월
- 2)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 내지 6호의 경우: 1개월

별표 1 제2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정명령의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 내지 3호의 경우: 2개월
- 2)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 내지 6호의 경우: 1개월

나. 운영정지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근거 법령	행정처분의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영 제2조의3제1항제3호	4개월	8개월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	2개월	4개월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	2개월	4개월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2개월	4개월

별표 1의 비고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경과조치)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인가 번호 : 】

제 호

교육연수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연수 종류

이수시간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연수 목적

을 위한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폐지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조의 3제6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를 받는 자는 설치인가 이후부터 취소 전까지 운영한 모든 연수 의 이수 기록, 성적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u>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u>영 제2조의2제1 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 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 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 한다)의 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u>2년</u> 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 <u>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원에 대하여 영 제2조의2제1항---</u> <u>운영</u> ----- ----- <u>3년</u>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u>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u>)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u>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u> 의 세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의3(<u>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세부기준</u>) ----- --- <u>시정명령, 제4항에 운영정 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 소</u> ----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 ③ (생략)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 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frac{\text{“자격연수성적평정점}=9\text{점}-\text{(연수성적만점}-\text{연수성적)}\times 0.025”}{5}$ 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7조(연수과정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 반영하지 않는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연수과정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
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
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
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
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기관-----

-----.